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차량충당연한 완화 〉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63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관 현 준

목 차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2201563)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차량충당연한 완화(안 제57조제1항)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검토의견	3
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7
1) 국토교통부	7
2)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7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220156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대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7. 10.
3. 회 부 일 : 2024. 7.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등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출고 이후 사용한 햇수인 차령이 3년 이내인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 도로 여건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의 운행여건이 나아진 상황이므로 차령 제한 기준을 현행 3년보다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영 상 효율성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차량충당연한 완화(안 제57조제1항)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충당(신규등록, 증차, 대폐차(代廢車)¹⁾)을 위한 화물자동차 차령 제한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7조(차량충당조건)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 ²⁾ 으로 정하는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제57조(차량충당조건) ① ----- ----- ----- ----- -----5년-----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차량충당조건 적용 제외 차량) 법 제57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1.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나. 검토의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의 총량은 신규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최근 3년간 화물자동차 총량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최근 3년간 신규·증차 대폐차 현황 】

구분	신규·증차 (대)	대폐차 (대)	계 (대)
2023년	21,521	52,397	73,918
2022년	18,365	44,201	62,566
2021년	17,771	45,512	63,283
계	57,657	142,110	199,767

자료 : 국토교통부

현행법 제5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³⁾은 화물자동차 운송

-
-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기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폐업하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폐업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운송가맹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업을 위탁받은 위·수탁차주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화물자동차를 그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충당하려는 경우 그 차량
 -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법인에 최근 2년 이상 소속된 5대 이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그 법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용으로 충당하려는 경우 그 차량
 -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대폐차(代廢車)할 때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보다 대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이 적은 경우 대차되는 차량
 - 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소방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위험물을 수송하기 위한 탱크트레일러는 제외한다) 또는 특수자동차
 -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차량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차량충당 연한) ① 법 제5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3년 이내의 차량으로 한다.

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충당(신규등록·증차·대폐차)을 위한 화물자동차는 차량이 3년 이내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2년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 및 화물의 안전수송을 위하여 차량충당을 위한 차량을 제한⁴⁾한 것이었음.

그러나 이에 대하여 해당 제한은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 도로 여건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의 운행여건이 나아진 상황임을 고려하지 못한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특히,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의 경우 폐차주기가 차량충당을 위한 차량제한 기준이 3년으로 정해진 시점인 2002년(2005년 기준 10.9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여 2023년 기준 16.3년에 이르고 있음.

【 국내 자동차 폐차주기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3년
승용	8.4	11.2	13.4	14.8	15.3	15.4
승합	8.2	10.2	12.0	14.9	15.5	14.5
화물	8.0	10.9	8.0	15.1	16.8	16.3
특수	9.9	11.9	15.6	17.1	16.8	16.5
전체	8.6	11.1	12.3	15.5	16.61	15.51

* 출처 : 한국자동차재활용협회, "연도별 평균 폐차 주기", 2024

자료 : 국토교통부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161665호, 건설교통위원장 제안, 2002.7.31. 본회의 의결)

3. 대안의 주요골자

바.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 및 화물의 안전수송을 위하여 신규등록·증차 또는 대·폐차시 충당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량을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0조)

또한, 차량 3년 이내의 차량으로만 충당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 개혁이 건의되었고, 이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조건 완화를 추진함을 심의·의결(2022.11.)한 바 있음.

개정안에 따라 차량충당연한이 완화됨에 따라 안전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현행법령⁵⁾은 차량이 13년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차량충당연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란 차령(車齡) 13년을 말한다.

참고로, 동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1716호, 2023.4.28.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되었는데,

해당 개정안에 대해 환경부는 차량 제조기술 여건 개선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에서 전기·수소차에 차량충당연한 적용 시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탄소중립 실현 등 환경강화 정책에 차질이 우려되는 점, 안전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강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잦은 고장·운행중단 등으로 인해 운전자의 운행여건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을 유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한편,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즉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57조제1항에 따를 때 차량충당연한 제한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⁶⁾으로 정하는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제한 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행령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차량충당 연한) ① 법 제5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3년 이내의 차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개정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일정기간(3개월 또는 6개월 등)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시 차량충당연한을 6년 이내에서 8년 이내로 2년 연장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1715호, 2023.4.28.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이 대안에 반영되어 통과되었고, 지난 2024년 1월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현재 시행 중임.

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차량 제한기준 3년은 '02년부터 20년 이상 유지 중이나, 그간 자동차 기술 발달 등에 따라 화물차 폐차주기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최근 화물차 안전 규제도 강화되는 등 규제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주요 이해관계자 이견도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2)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자동차 제작 기술 발달 및 도로 여건 개선 등으로 화물자동차 운행 여건이 향상되었고, 정부 차원에서의 화물자동차 전수조사 및 노후 화물자동차 관리제도 시행, 안전관리 실태 점검 실시 등으로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 여건도 개선되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차령 제한 기간을 3년
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데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580